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박연숙 · 구혁모 · 이은진 · 임채덕 · 황광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박연숙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심의위원회와 사안별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자율해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5조)
-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비밀유지 및 협의회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제정안은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또는 사후에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선제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세정1과장 김혜숙)

가.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지원 및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1) 감면세목: 2022년 재산세(건축물, 토지) ※ 도시지역분 포함
- 2) 감면대상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대상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임대사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3) 대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 4) 감면물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 5) 감면율: 최대 50%, 총 임대료 인하액 ÷ [(연간임대료 합계 ÷ 12) × 3]
※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음
- 6) 감면제외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

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 재산세 감면

1) 감면세목: 2022년 재산세(건축물) ※ 도시지역분 포함

2) 감면물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3) 감 면 율: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대상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간접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회계과장 김지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 1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바,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 관련 사항을 「화성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나. 주요내용

-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 1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재정보증 관련 사항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민원봉사과장 백진현)

가. 제안이유

-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시정업무 상담 시 고객만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One-Stop 상담으로 신속·친절·정확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 공무원의 전화응대 감소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상담인력 관리
 -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 위 치: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3층

- 개소일자: 2008. 1. 2.(확대이전: 2013. 9. 10.)
- 주요시설

구 분	세부 시설내용	면 적(m ²)
사무실 3층 (화성종합경기타운)	상담석, 교육장, 휴게실, 전산실, 회의실 등	534m ²

○ 위치도 및 사무실 배치도

위치도

사무실 배치도

○ 민간위탁 기간

- 기간: 2022. 9. 10. ~ 2024. 9. 9.(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후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선정
- 자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30석 이상의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예산액(2022 본예산): 1,276,872천원

☞ 상담원 28명 기준 연간소요예산

- 향후 추진계획

• 2022. 3.: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 2022. 5. ~ 7.: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2. 7.: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2. 7.: 위·수탁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시정업무 상담 시 고객만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의회동의 및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One-Stop 상담으로 신속·친절·정확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공무원의 전화응대 감소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책기획과장 김진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05조)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인수위원회의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05조)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책기획과장 김진관)

가. 제안이유

-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공공성 및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추진계획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 위치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256-15 일원
- 면적 : 6,385m² (약 1,930평)
- 사업비 : 1,387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43년
- 사업방식 :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사업

○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 도시공사 자금조달 여건, 사업리스크 분산, 민간의 효율적 사업관리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되,
-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70% 지분출자(화성도시공사 10%, 한국수력원자력 60%)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출자방법 : 현금출자

○ 출자규모

- 출자비율 :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의 10%
- 출자금액 : 13.8억 원 출자 예정

○ 출자재원 : 도시공사 자체재원

○ 출자시기 : 주주 간 협약 체결 및 SPC 참여 시 (2022년 5월 예정)

○ 사업비 조달 계획

- 주주 간 협약에 따라 SPC에서 필요자금 조달
- 화성도시공사 출자금(13.8억원) 외 채무부담행위 없음

- 필요 조달액 : 약 1,387억 원(SPC 자본금 139억 원, 타인자본 1,248억 원)
- ※ 타당성 검토 시 산정된 사업비 기준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변경 가능

○ 사업 및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 : 이지회계법인(2021. 12.)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추진계획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공공성 및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

가. 제안이유

-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여, 성과에 기반한 예산집행을 통해 우리시 예산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 이를 통해 동탄호수 공원 내 외식창업지원 허브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외식창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의거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추진경과
 - ' 21.10월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 ' 21.10월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공고
 - ' 22. 3월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계획 수립
 - ' 22. 3월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 사업개요
 - (대상) 화성시내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기창업자

- 소득이 없는 시민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외식업 분야 기창업자
 - (성과지표)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인건비 사업수행 기간 내 창업기업의 총 인건비 및 기업의 생존가치 최종 생존율(4년) 및 미래 생존율을 현재가치로 환산
 - (기간) 4년
 - (총사업비) 25억원
 - 사업수행비 2,100백만원, 운영비 350백만원, 평가비 50백만원
 - (성과측정) 전문 성과평가기관이 성과측정 및 검증
- 보상체계 : 사업의 성과 단계에 따라 총사업비 및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인센티브는 최종 성과에 따라 최소0원~최대 12.1억원 차등 지급
(투자수익률 : 최대9%)

<보상체계>

(단위 : 원)

최종 성과	순 공익가치 ¹⁾ (사회적가치)	투자자 인센티브	기관 인센티브	총 상환액 (화성시 예산)	비고
6,000,000,000	2,290,000,000	900,000,000	310,000,000	3,710,000,000	최대성과
5,500,000,000	1,790,000,000	900,000,000	310,000,000	3,710,000,000	
5,200,000,000	1,490,000,000	900,000,000	310,000,000	3,710,000,000	
5,000,000,000	1,377,500,000	835,000,000	287,500,000	3,622,500,000	성과구간
4,500,000,000	1,101,000,000	668,000,000	230,000,000	3,398,000,000	
4,000,000,000	769,000,000	501,000,000	172,500,000	3,173,500,000	
3,500,000,000	551,000,000	334,000,000	115,000,000	2,949,000,000	
3,000,000,000	425,800,000	167,000,000	57,500,000	2,724,500,000	
2,500,000,000	0	0	0	2,500,000,000	성과기준
2,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0	2,000,000,000	손실구간

1) 순 공익가치 = 최종 성과-총 상환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의거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동탄호수 공원 內 외식창업지원 허브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외식창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화성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3.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홍보기획관 이문환)

가. 제안이유

- 시정소식지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배부대상을 확대하고, 원고료 현실화 및 이벤트 당첨자 경품의 다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정소식지 배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성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배부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함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 이벤트 경품 지급 형태에 상품권 포함(안 제8조제3항)
- 원고료 지급 기준 세분화 및 원고료 지급액 현실화(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현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을 확대하고 원고료 현실화 및 당첨자 경품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정소식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